

구매약관(대한민국)

1. 일반조항

- a. 본 약관(이하 '약관')에서 '구매업체'는 공급업체로부터 상품 및/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는 엘리먼트 머티리얼스 테크놀로지(Element Materials Technology) 그룹 법인을 의미하며, '공급업체'는 주문서에 명시된 공급업체를 뜻한다. '상품'은 주문서에 명시된 상품 또는 기타 자재와 필요한 부수적 상품 또는 자재 일체를, '서비스'는 주문서에 명시된 서비스와 필요한 부수적 서비스 일체를 의미한다. '회사'는 구매업체 및/또는 그 자회사 일체를 뜻한다. '계약'은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판매 및 구매를 위해 구매업체와 공급업체 사이에 체결된 (본 약관 및 주문서를 포함한) 계약서를 의미한다. '주문서'는 공급업체의 상품 및/또는 서비스에 대한 구매업체의 주문을, '공급업체 보증서'는 5a, 5b, 5c 항에 적시된 관련 보증을 뜻한다.
- b. 주문서는 본 약관에 따라 공급업체로부터 상품 및/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겠다는 구매업체의 제안을 구성한다. 주문서는 다음 중 이른 시점에 수락된 것으로 간주된다.
 - i. 주문에 대한 공급업체의 서면 수락서 발행
 - ii. 주문 이행과 일치하는 공급업체의 여하한 행위
 해당 시점 및 일자부터 계약이 성립한다.
- c. 본 약관 및 주문서는 계약의 주제와 관련하여 당사자 쌍방이 합의한 조항 일체를 포함하며, 당사자 쌍방간의 여하한 사전 서면 또는 구두 합의, 진술, 제안 문서 또는 양해(여하한 브로셔, 가격 목록, 주문확인서 또는 유사한 문서에 적용된다고 공급업체가 주장하는 여하한 약관 포함)를 대체한다. 본 약관은 공급업체가 시행 또는 부과하고자 하는, 또는 교역, 관습, 관행, 거래 과정에서 암시되는 여하한 기타 조건의 배제에 적용된다. 주문서 또는 본 약관에 대한 여하한 변경은 구매업체의 명시적 서면 합의 없이는 효력을 발휘하지 아니한다. 본 약관은 구매업체의 법정 권리 및 기타 법적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d. 본 약관 내 제목은 오로지 편의를 위한 것으로 그 해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포함'이라는 문구는 앞서 등장한 문구의 일반적 효과를 제한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제시되는 여하한 예시가 해당 사안의 배타적 또는 제한적 예시가 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해석된다.

2. 상품의 인도/서비스의 제공

- a. 공급업체는 주문서에 명시된 인도 또는 완료 일자까지 상품을 인도하고/하거나 서비스의 제공을 완료한다. 일자가 적시되지 아니한 경우, 상품의 인도 및/또는 서비스의 완료는 주문서 일자로부터 28 일 이내 또는 구매업체와 공급업체가 서면으로 합의한 이후 일자로 한다. 상품의 인도 및/또는 서비스의 완료 시점은 계약서의 핵심 내용이다.
- b. 구매업체에 대한 상품의 인도 및 서비스의 제공은 주문서에 명시된 장소(또는 명시된 사항이 없는 경우 주문서를 발송한 구매업체 부지)에서 주문서에 명시된 방법(또는 명시된 사항이 없는 경우 업계에서 통용되는 선진 관행과 일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 c. 공급업체는 주문서에 명시된 수량만큼의 상품을 인도한다. 구매업체는 재량에 따라 수량 변동을 수락하고 실제 인도된 수량에 비례하여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 d. 상품이 훼손되지 아니한 상태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이동 시 상품을 적절히 포장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주문서에 달리 명시되지 아니한 한, 포장용기 및 기타 포장재 일체는 가격에 포함되며 환불이 불가하다.
- e. 공급업체는 상품의 공급 및 인도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수출입 면허, 허가 또는 동의 일체(취업 허가 또는 동의 포함)를 자비로 획득하고 준수한다.
- f. 구매업체 또는 그 대표자는 상품을 검사 및 테스트하고 서비스 제공을 검사할 권리를 가지며, 공급업체는 이러한 목적으로 자사 부지에 출입할 권한을 구매업체에 불가역하게 부여한다. 이러한 검사 또는 테스트의 결과로 구매업체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가 계약을 준수함을 납득하지 못하고 해당 사항을 공급업체에 통지하는 경우, 공급업체는 계약 준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일체의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여하한 검사 또는 테스트는 구매업체의 수락을 암시하지 아니한다.
- g. 구매업체는 상품의 사양 또는 서비스의 수행 방법, 수량, 포장, 상품 인도 또는 서비스 수행의 시점 또는 장소의 변경을 포함, 주문서와 관련한 변경을 언제든지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러한 변경으로 인하여 상품 인도 및/또는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비용 또는 시간이 증가하는 경우, 상품의 인도 또는 서비스의 수행을 위한 가격 및/또는 일정을 형평성 있게 조정하여야 한다. 공급업체에 의한 여하한 조정 청구는 공급업체가 그러한 변경을 진행하기에 앞서 구매업체의 승인을 반드시 득하여야 한다.
- h. 구매업체는 상품의 인도 또는 서비스의 수행 이전에 언제든지 공급업체에 통지하는 방식으로 주문 전체 또는 일부를 취소할 권리가 있다. 이 경우 구매업체의 유일한 책임은 취소 시점에 진행 중이던 작업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공급업체에 지급하는 것이나, 이러한 보상에는 예상 수익의 상실 또는 여하한 간접손해가 포함되지 아니한다.

3. 가격 및 대금 지급

- a. 주문서에 달리 명시되지 아니한 한,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되 기타 일체의 관세, 수수료 또는 세금, 인도 비용, 운송 비용, 포장 비용 또는 구매업체에 대한 지급금을 포함하며, 구매업체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조정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b. 주문서에 가격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공급업체가 주문을 이행하기 전에 가격에 대한 구매업체와의 서면 합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 c. 주문서 번호, 부가가치세율, 부가가치세 부과 금액, 공급업체의 부가가치세 등록번호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구매업체는 공급업체의 세금계산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주문서에 달리 명시되지 아니한 한, 구매업체의 대금 지급 기한은 구매업체가 공급업체로부터 수령한 세금계산서 일자로부터 육십(60)일 후이다. 주문서에 달리 명시되지 아니한 한, 공급업체는 구매업체에 상품을 인도하거나 서비스를 완료하는 시점까지 구매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송할 수 없다.
- d. 구매업체의 대금 지급은 공급업체에 대한 구매업체의 여하한 클레임 또는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계약 하의 공급업체의 의무 충족에 대한 구매업체의 여하한 인정도 구성하지 아니한다. 공급업체와의 여하한 분쟁 또는 클레임 발생 시 구매업체는 계약 하의 여하한 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 e. 구매업체는 공급업체에 대한 서면 통지를 통하여 회사에게 공급업체가 지불할 대금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구매업체가 공급업체에 지불할 대금 중 여하한 일부 또는 전체를 상각할 수 있다. 단, 이는 공급업체의 여하한 채무불이행과 관련하여 구매업체가 취할 수 있는 여하한 기타 구제조치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4. 위험 및 권원

- a. 상품에 대한 위험 및 권원은 구매업체에게 인도되는 시점에 (또는 해당하는 경우, 구매업체의 운송업체가 상품을 수령하는 시점에) 구매업체에게 이전된다. 단, 서비스와 관련하여 상품이 구매업체에 이전되는 경우, 구매업체 부지 또는 자산으로 상당한 통합이 이루어지는 시점과 서비스가 완료되는 시점 중 이른 시점에 위험 및 권원이 구매업체로 이전된다.
- b. 구매업체가 계약 하에 구매업체에 공급될 상품의 제조에 사용할 자재 및/또는 장비를 공급업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이러한 자재 및/또는 장비는 항상 구매업체의 소유이나 공급업체의 수령 시점부터 공급업체의 책임이 된다. 공급업체는 이러한 자재 및/또는 장비를 계약 하에 상품을 제조할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이러한 자재 및/또는 장비가 여하한 청구, 유권권 또는 채무의 대상이 되도록 하지 아니하며, 합리적으로 실현 가능한 경우 이러한 자재 및/또는 장비를 따로 분리하여 구매업체의 자산으로 명확히 파악되도록 한다.
- c. 공급업체는 구매업체가 공급업체에 공급한 자재, 장비, 기구, 도면, 시방서, 데이터 일체(이하 '구매업체 자재')를 스스로의 책임으로 안전하게 보관하고, 구매업체 자료를 구매업체에 반환할 때까지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며, 구매업체의 서면 지시 또는 승인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구매업체 자료를 처분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다.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공급업체에 제공된 품목 일체에 대한 권원은 항상 구매업체가 보유한다. 공급업체는 이러한 품목과 관련하여 여하한 성격의 선취특권도 행사하거나, 주장하거나, 행사 또는 주장을 의도하지 아니하며, 해당 품목의 위험은 서비스가 완료되어 구매업체에 재인도되는 시점까지 공급업체가 보유한다. 재인도가 이루어지는 시점부터 위험은 구매업체에 귀속된다.

5. 보증 및 책임

- a. 상품의 경우 공급업체는 구매업체에 다음을 보증한다.
 - i. 인도 시점의 상품은 구매업체가 공급업체에 공급한 시방서 및/또는 도면 일체와 일치하며, 시방서 및/또는 도면이 없는 경우 공급업체의 표준 시방서와 여하한 설명 또는 견본과 일치한다.
 - ii. 상품은 공급업체가 유지하는, 구매업체가 명시한, 또는 계약 또는 당사자 쌍방간의 거래로부터 합리적으로 추론 가능한 방식으로 만족스러운 품질과 타당한 디자인, 자재 및 완성도, 그리고 여하한 목적에 대한 적합성을 가져야 하며, 공급업체는 상품의 공급을 위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공급업체에 제공된 구매업체의 품목 일체 또는 기타 자재(해당하는 경우)를 스스로의 책임으로 보관하고 해당 업계에서 받아들여지는 최고 수준의 주의 및 기술로 취급한다.
 - iii. 상품은 해당 상품의 제조, 포장, 라벨 부착, 보관, 취급 및 인도와 관계된 준거 법률, 표준, 규정 일체(및 주문에 명시된 여하한 컬렉션, 수량 또는 기타 요건), 그리고 관련된 보건, 안전, 환경 규제 일체, 그리고 업계에서 통용되는 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b. 서비스의 경우 공급업체는 구매업체에 다음을 보증한다.
 - i. 구매업체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에 서비스가 합의된 시방서와 일치하거나, 이러한 시방서가 없는 경우 공급업체의 표준 시방서 및 여하한 설명 또는 시연과 일치하며 그 외에 해당 업계에서 제공되는 유사 서비스 중 최고 수준이자 구매업체가 합리적으로 만족하는 서비스여야 한다.
 - ii. 서비스는 해당 업계에서 받아들여지는 최고의 주의, 기술, 완성도 기준에 따라 제공되어야 하며, 공급업체는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공급업체에 제공된 구매업체의 품목 일체 또는 기타 자재(해당하는 경우)를 스스로의 책임으로 보관하고 해당 업계에서 받아들여지는 최고 수준의 주의 및 기술로 취급한다.
 - iii. 배정받은 업무의 수행을 위한 적절한 기술 및 경험을 가진 인력을 활용하고, 본 계약에 따라 공급업체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를 배치한다.
 - iv. 최고 품질의 상품, 자재, 표준 및 기법을 사용하고, 서비스에 공급 및 사용되었거나 구매업체로 이전된 산출물과 상품 및 자재 일체에 완성도, 설치 및 디자인 불량 없이 보장한다.
 - v. 적용 가능한 표준, 규정, 법적 요건 일체, 그리고 업계에서 통용되는 관행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vi. 구매업체의 부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경우, 공급업체는 때때로 그리고 구매업체의 기타 합리적 요청에 따라 관련된 구매업체 정책 일체(보건 및 안전 정책과 물리, 시스템 및 정보보안 정책 포함), 그리고 시행 중인 구매업체의 현장 규제를 준수하여야 한다.
- c. 공급업체는 구매업체가 사업 수행 목적으로 의존하는 여하한 면허, 인가, 동의 또는 허가를 상실하게 만들 수 있는 여하한 행위를 수행 또는 생략하지 아니할 것임을 보증하며, 공급업체는 구매업체가 서비스에 의존하거나 이에 따라 행동할 것임을 인식한다.
- d. 상품 및/또는 서비스(또는 여하한 요소)가 공급업체의 여하한 보증을 준수하지 아니한다고(위반사항이 아무리 경미하더라도) 구매업체가 판단하는 경우, 구매업체는 공급업체에 대한 통지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할 수 있다.
 - i. 여하한 상품 또는 그 여하한 일부(이러한 준수 실패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 여하한 상품 또는 상품 일체 포함)를 거절하고/하거나, 이미 지급된 여하한 대금의 즉시 환불을 요구하고/하거나 주문을 취소한다(의심의 여지를 방지하자면, 구매업체가 상품을 재판매하거나 달리 처리한 경우에도 이러한 권리는 여전히 구매업체에게 제공됨).
 - ii. 여하한 상품의 추가 인도 또는 여하한 서비스의 추가 제공을 거부한다(또 다른 계약 하의 경우 포함).
 - iii. 공급업체에게(무상으로) 상품을 보상 또는 대체하거나 구매업체가 만족하도록 서비스를 재이행하도록 요구한다(두 경우 모두 30 일 이내). 공급업체가 준수에 실패하거나 보상, 수리 또는 재이행이 불만족스러운 경우 여하한 보상, 수리, 대체 또는 재이행 요구가 이루어졌더라도 구매업체의 상품 및/또는 서비스 거절을 막을 수 없다. 여하한 대체 상품 또는 재이행된 서비스는 모든 측면에서 공급업체의 보증을 준수하여야 한다.
 - iv. (자체적으로 또는 제 3자 주선을 통하여) 공급업체의 비용 부담으로 상품을 보상, 수정, 수리 또는 다른 방식으로 교정하거나 서비스를 재이행한다. 공급업체는 요청 시 이러한 보상, 변경, 수리, 교정 또는 재이행 비용 및 경비를 구매업체에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
- e. 공급업체의 보증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주장되는 상품은 공급업체의 조사를 위하여 구매업체가 실현 가능한 수준에서 최대한 보존하며(단, 공급업체는 구매업체가 불량 주장을 통지한 후 14 일 내에 공급업체로 반환하여야 한다).
- f. 공급업체는 공급업체(또는 그 하도급업체)의 서비스 제공 또는 상품 공급 미이행으로 인한 것이든, 공급업체(또는 그 하도급업체)의 다른 부주의로 인한 것이든 구매업체, 구매업체의 직원, 구매업체의 자산, 여하한 제 3자에 대한 여하한 손실 또는 손해 일체에 대하여 구매업체가 입을 수 있는 여하한 잠재적 손실 또는 손해를 보전하기에 적절한 금액(또는 주문서에 명시된 기타 관련 금액)으로 평판이 좋은 보험사의 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공급업체는 구매업체의 요청 시 이러한 보장의 증거를 구매업체에 제공한다.

6. 불가항력

합리적 통제를 벗어난 여하한 환경(천재, 홍수, 가뭄, 지진 또는 기타 자연재해, 전염병, 유행병, 전쟁, 여하한 법률, 또는 정부 또는 공공당국이 취한 여하한 조치, 화재, 공장 또는 기계 고장, 연료 또는 전력 불가용, 폭발, 국가 비상사태 포함)으로 인하여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사업 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구매업체는 인도 또는 대금 지급 일자 연기, 주문 취소 및/또는 달리 계약을 변경할 권리를 보유한다.

7. 지적재산권 및 제 3 자 클레임

- a. 계약의 목적으로 구매업체가 준비한 디자인, 도면, 인쇄물, 견본, 시방서 및 기타 자재 일체, 그리고 계약의 목적으로 공급업체가 준비하였으며 구매업체의 독점적 디자인 또는 기타 지적재산(특허, 발명, 노하우, 영업비밀, 의장등록, 저작권, 데이터베이스권, 상표, 서비스표, 로고, 도메인명, 업체명, 상호 및 의장권 포함)을 대표, 포함 또는 상징하는 여하한 관련 품목, 또는 구매업체의 의뢰 또는 시방서에 따라 공급업체가 준비한 여하한 관련 품목은 (경우에 따라) 구매업체의 자산으로 남겨나 구매업체의 자산이 되며, 계약의 완료 또는 종료 시점에 구매업체에 반환된다. 공급업체는 구매업체의 권리와 관계된 완전한 권리, 권원 및 이해관계를 행사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수준으로 이러한 문서, 승인 또는 선언을 구매업체의 요청에 따라, 구매업체의 비용 부담 없이 수행하거나 (경우에 따라) 그러한 수행을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 b. 공급업체는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급업체가 적용 또는 사용할, 구매업체에서 요구한 여하한 상표 또는 상표명을 구매업체가 승인하지 아니한 여하한 방식으로 사용하거나 이러한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 c. 공급업체는 구매업체의 여하한 지적재산권을 무효화하거나 이에 부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여하한 행위를 수행하거나 여하한 제 3 자가 이러한 행위를 수행하도록 승인하지 아니하며, 그 생략을 통하여 이러한 효과를 내게 될 여하한 행위를 생략하거나 여하한 제 3 자가 이러한 행위를 생략하도록 승인하지 아니한다.

8. 기밀유지

공급업체는 기술적 또는 상업적 노하우, 시방서, 발명, 프로세스 또는 과제, 또는 구매업체의 사업, 업무나 자산, 또는 상품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로서 기밀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구매업체와 그 직원, 대리인 또는 하도급업체에 의하여 공급업체에 공개된 정보, 그리고 구매업체의 사업 또는 공급업체가 취득할 수 있는 구매업체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계된 여하한 기타 기밀정보(구매업체의 사전 서면 동의를 득하지 아니한, 7 조 (a)항에 언급된 여하한 해당 정보 포함)를 엄격한 기밀로 유지하여야 한다. 공급업체는 자사 직원, 대리인 또는 하도급업체에 대한 이러한 기밀정보의 공개를 계약 하의 공급업체의 의무를 이행할 목적으로 알아야 할 수준으로 제한하고, 이러한 직원, 대리인, 하도급업체가 공급업체를 구속하는 기밀유지 의무에 상응하는 기밀유지 의무를 지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본 8 조는 계약의 종료 이후에도 효력을 유지한다.

9. 정보의 보호

본 9 조에서 (i) '정보보호법'은 대한민국에서 시행 중인 정보보호 관련 준거법을 의미하며, (ii) '처리하다/처리/처리된', '정보관리 담당자', '정보처리 담당자', '정보주체', '개인정보', '개인정보 유출'은 정보보호법에 명시된 내용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 a. 공급업체는 서비스의 제공에 달리 필요하지 아니한 한 업체 담당자 정보(예: 업체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직함 또는 직원 ID) 이외의 개인정보를 구매업체에 제공하거나 달리 이용 가능하게 만들지 아니하기로 합의한다. 단, 서비스의 제공에 달리 필요한 경우 공급업체가 이러한 추가 개인정보를 사전에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구매업체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 b. 계약 하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급업체는 항상 정보보호법을 포함한 개인정보 관련 성문법 및 보통법 의무 일체를 준수하여야 한다. 공급업체가 여하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도에 상응하여, 공급업체는 다음을 수행하여야 한다. (i) 공급업체에 적용되는 법률에서 달리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구매업체의 문서화된 지시(이는 달리 합의하지 아니한 한 계약의 조건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라는 지시임)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처리, 이전, 조정, 수정 또는 변경하거나, 또는 여하한 제 3 자에게 개인정보를 공개하거나 개인정보의 공개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단, 이 경우 공급업체는 처리에 앞서 해당 법적 요건을 구매업체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해당 법률에서 중요한 공익을 이유로 이러한 고지를 금지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ii) 이러한 개인정보의 미승인 또는 불법 처리, 그리고 이러한 개인정보의 우발적 손실이나 파괴 또는 손상을 막기 위한 적절한 기술적, 조직적 조치 일체를 취하고, 최소한 정보보호 준거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적절한 개인정보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기술적, 조직적 조치를 이행하고 유지한다. (iii) 구매업체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그리고 여하한 경우에 적절한 정보이전 계약 없이 대한민국 이외의 여하한 국가로 개인정보를 이전하지 아니한다. (iv) 개인정보 접근권이 있을 수 있는 직원들이 적절한 기밀유지 의무 또는 약속을 하도록 한다. (v) 여하한 구매업체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 이외에는 여하한 하도급업체의 개인정보 처리(이하 '하위 처리 담당자')를 인가하지 아니한다. (vi) 본 계약의 종료 또는 만료 시 구십(90)일 안에 개인정보의 처리를 중단하거나, 그보다 이른 경우 관계된 서비스를 중단한 후 최대한 빨리(구매업체의 의함에 따라) 개인정보, 그리고 개인정보나 그에 포함된 정보의 여하한 사본을 반환하거나 안전하게 시스템에서 제거한다. 단, 공급업체가 법적 또는 규제 요건으로 인하여 유지하여야 하는 수준의 개인정보는 제외한다.
- c. 구매업체가 정보주체로부터 정보보호 준거법에 따른 여하한 권리를 행사하라는 요청을 받은 경우, 공급업체는 합리적으로 실현 가능한 수준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구매업체에게 이를 통지한 후 구매업체가 적시에 정보주체의 접근권 요청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실행 및 유지하고 이와 관련된 일체의 지원을 제공한다.
- d. 공급업체는 개인정보 유출 또는 개인정보 유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구매업체에 신속하고 지체 없이(여하한 경우에도 인지 시점으로부터 24 시간 이내에) 통지하여야 하며, 구매업체가 정보보호법 하에 개인정보 유출 보고 의무를 충족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충분한 정보를 구매업체에 제공하고 구매업체에서 지시한 조치를 취하여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조사, 완화, 구제조치를 지원하여야 한다.
- e. 공급업체는 구매업체가 이러한 추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하는 경우) 구매업체 또는 구매업체의 지시를 받은 감사가 수행하는 여하한 감사 또는 검토 활동을 허용하고 이에 기여하여 공급업체가 본 9 조에 명시된 의무를 준수한다는 확약을 제공한다. 단, 언제나 이러한 요건은 공급업체가 (i) 공급업체의 내부 가격정책 또는 (ii) 공급업체의 기타 고객사와 관계된 정보(정보보호 당국이 지시 또는 요구한 경우 제외)를 제공하거나 그에 대한 접근권을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공급업체는 본 계약에 따라 구매업체가 제공한 지시가 여하한 정보보호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매업체에 반드시 이를 즉시 고지하여야 한다.
- f. 본 계약 하의 처리 주제 및 목적은 본 계약에 적시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러한 처리는 9 조 (b)항 (vi)호에 따라 해당 서비스가 제공되는 기간 전체에 걸쳐 이루어진다. 처리의 성격은 공급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처리 업무로, 이는 본 계약에서 보다 자세하게 기술될 수 있다. 이러한 처리는 구매업체의 고객 및/또는 직원(해당하는 경우)과 관계된 것으로, 성명과 연락처, 신원 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정보관리 담당자로서 구매업체가 가지는 의무와 권리는 본 계약 9 조 및 기타 조항에 적시되어 있다. 구매업체는 정보보호 준거법 하의 요건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합리적으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때때로 공급업체에 대한 서면 통지를 통하여 본 9 조 (f)항을 합리적으로 수정할 수 있다.

10. 부패방지

- a. 공급업체는 대한민국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OECD 뇌물방지협약, 영국의 2010 년 뇌물수수법, 미국의 1977 년 해외부패방지법(이하 '반부패법')을 포함하는 뇌물방지 및 반부패 관련 준거 법률, 법령, 규제, 규정 일체를 준수하고 여하한 반부패법에 대한 구매업체의 위반을 초래하는 여하한 행위의 수행 또는 생략을 아니하기로 약속한다. 공급업체는 구매업체에서 공급업체에 통지하고 수시로 최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구매업체의 반부패 정책을 준수한다.
- b. 공급업체는 계약의 수행과 관련하여 공급업체가 받는 여하한 유형의 부당한 금전적 또는 기타 이득에 대한 여하한 요청 또는 요구를 구매업체에 즉시 보고한다.

11. 현대판 노예제

- a. 계약 하의 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급업체는 2015 년 현대노예법을 포함하여 노예제 및 인신매매의 방지와 관련된 준거 법률, 법령, 규제, 규정 일체를 준수하고 각 하도급업체도 이를 준수하도록 한다.
- b. 공급업체는 자사의 공급업체, 하도급업체, 공급망 내 기타 참여자에 대한 실사 절차를 실행하여 자사 공급망 내에서 노예제 또는 인신매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c. 공급업체는 자사 공급망 내에서 실제 노예제나 인신매매, 또는 노예제나 인신매매로 의심되는 행위를 인지하는 즉시 구매업체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2. 면책조항

공급업체는 다음의 결과로 또는 다음과 관련하여 구매업체가 부담하게 될 수 있는 여하한 손실, 절차, 책임, 클레임, 비용 및 경비(완전면책 기준의 법률비용 포함)로부터 구매업체를 면책한다.

- i. 공급업체의 여하한 보증을 준수하는 데 실패한 여하한 상품 및/또는 서비스
- ii. 불량이거나 여하한 준거법 또는 규정을 준수하는 데 실패한 여하한 상품 및/또는 서비스
- iii. 공급업체의 상품 인도 또는 서비스 수행 지연이나 불완전 이행
- iv. 공급업체에 의한 계약의 여하한 기타 위반, 또는 공급업체, 그 직원, 대리인 또는 하도급업체에 의한 여하한 과실행위(사망 및/또는 개인상해 초래 또는 기여 여부와 무관)
- v. 구매업체의 직원 또는 대리인이 안은 여하한 책임, 손실, 손해, 비용 또는 경비와 관련하여 여하한 고객 또는 제 3 자가 구매업체에 제기한 여하한 청구(상품 및/또는 서비스로 인하거나, 이와 관계되거나 또는 이로부터 해당 책임, 손실, 손해, 비용 또는 경비가 발생한 정도에 상응)
- vi. 여하한 특허, 의장등록, 저작권, 의장권, 상표, 서비스표 또는 상표명이나 기타 지적재산권 하의 제 3 자 또는 구매업체의 권리에 대한 공급업체의 여하한 실제 침해 또는 침해 의심

13. 계약의 종료 및 중지

- A. 다음의 경우 구매업체는 공급업체에 대한 서면 통지를 통해 계약을 즉시 종료하거나 주문 전체 또는 여하한 잔여 부분을 중지할 수 있다.
 - i. 공급업체가 2 조 (a)항에서 요구하는 일자 또는 기간 내(경우에 따라)에 상품을 인도 또는 발송하거나 서비스를 개시 또는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계약의 여하한 기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 ii. 공급업체가 지급기한이 도래한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거나, 사업 운영을 중단(또는 중단하겠다고 위협)하거나, 채권자와 여하한 협의 또는 구성을 체결하거나, 해산을 위하여 여하한 파산행위 실행, 명령 또는 유효한 결의안 통과가 이루어지거나, 법원에 신청서가 제출되거나, 또는 수신자 겸 관리자, 수신자, 행정적 수신자 또는 관리자가 임명되거나 상기 내용에 상응하는 해외 상황을 겪는 경우
 - iii. 13 조 (a)항 (ii)호의 사건이 발생하였거나 앞으로 발생할 것으로, 또는 공급업체가 계약에 따라 상품을 인도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할 것으로 구매업체가 의심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 b. 13 조 (a)항에 적시된 상황에서, 구매업체는 계약을 위하여 준비 중인 여하한 상품을 해당 상품의 생산이 이루어지던 부지에서 반출시키고 해당 상품을 다른 장소에서 완성하거나,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급업체에 또는 공급업체를 대표하여 제공된 여하한 자재를 해당 자재가 서비스와 관련하여 처리되거나 달리 취급되던 부지에서 반출시킬 권리를 가진다. 구매업체는 타 업체를 통하여 상품 및/또는 서비스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구매업체에 발생한 비용을 공급업체에 청구할 권리가 있으나, 제공된 여하한 서비스, 반출된 상품 또는 자재, 또는 구매업체가 인수한 재공품의 대가를 적절한 비율로 공급업체에 지급하여야 한다.

14. 기타 사항

- a. 본 계약에 따른 구매업체의 권리 또는 구제조치 일체는 본 계약 또는 여하한 기타 계약에 따른 구매업체의 여하한 기타 권리 또는 구제조치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b. 본 계약의 여하한 조항도 당사자 쌍방간의 제휴를 형성 또는 형성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 c. 공급업체는 구매업체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계약 하의 권리 또는 의무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임, 이전, 하도급 또는 여하한 기타 방식으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 d. 관할당국에서 (전체 또는 일부가) 무효, 원천무효, 실행 불가능 또는 불합리하다고 판단한 본 약관의 여하한 조항은 이러한 무효, 원천무효, 실행 불가능 또는 불합리의 정도만큼 분리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며, 본 약관의 기타 조항과 해당 조항의 나머지 부분은 이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e. 통지는 반드시 영문 서면으로 구매업체 또는 공급업체의 주소지로 이루어져야 하며 인편, 1 등 우편, 팩스 또는 전자메일로 전달할 수 있다. 인편으로 전달하는 경우, 전달 일자 이후 첫 번째 영업일에 통지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우편으로 전달하는 경우, 1 등 우편으로 선불 발송한 일자 이후 세 번째 영업일에 통지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팩스 또는 전자메일로 전달하는 경우, 전송 시점에 통지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 f. 여하한 권리, 권한 또는 구제조치에 대한 구매업체의 그 어떤 실행 실패 또는 지연도 그에 대한 권리 포기로 작동하지 아니하며, 여하한 부분적 실행도 동일한 또는 일부 기타 권리, 권한 또는 구제조치의 추가 실행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여하한 계약 조항에서 부여된 구매업체에 대한 구제조치도 여하한 기타 구제조치를 배제하려는 의도를 가지지 아니하며, 모든 구제조치는 기타 모든 구제조치에 더하여 누적된다.
- g. 본 약관 중 계약 종료 이후에도 명시적 또는 암시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조항은 계약 종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시행 가능하다(7 조, 8 조, 10 조, 13 조 (b)항 포함).
- h. 계약의 당사자 쌍방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여하한 자가 계약의 여하한 조건을 시행 가능하도록 할 의향이 없다. 다시 말하여,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자는 계약 하의 또는 계약과 관련된 여하한 권리도 보유하지 아니한다.
- i.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공급업체는 제 1 심 재판 관할권을 가지는 상호 합의된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배타적 관할권에 따른다.